B2B 구매론 이용약정서

(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귀 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체결된 B2B 구매론 계약에 기초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구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등 이라 함)을 판매한 기업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 조(목적)

이 약정은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의 "B2B 구매론" 계약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이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을 수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P(Market Place,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e-Marketplace)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
2. "구매기업"이라 함은 MP 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의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
3. "판매기업"이라 함은 MP 에서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의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
4.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라 함)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MP 에서 체결한 거래품목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정보와 결제수단, 결제예정금액, 만기일, 결제예정일, 권리이전(인수)예정일 등의 대금결제정보가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말합니다.
5.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MP 에서 은행으로 전송된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이 은행으로 지급지시(일반거래인 경우) 또는 지급위탁(매매보호거래인 경우)한 구매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6.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하며, 매매계약서의 결제예정금액과 동일합니다.
7.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하며, 매매계약서의 만기일과 동일합니다.
8.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지급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0.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선입금 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1. "지급보증"이라 함은 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승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2. "권리이전(인수)"라 함은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배송 받은 물품 등을 검수한 후, 해당 승인명세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최종 지급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3. "일반거래"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4.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5.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5-06-0558(1 - 6) (2021.03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215호(2021.03.23)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5년)

16.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 선입금 등 B2B 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 조(입금계좌의 지정)

판매기업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약정계좌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제 4 조(승인명세의 지급보증, 취소, 변경 및 제한)

① 승인명세에 대한 지급보증,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통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전송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만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합니다.

2. 구매기업이 MP 에서 판매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 전송된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은행은 취소된 승인명세에 대하여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승인명세 전송 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세금계산서(승인)번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세금계산서세액,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

5.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명세 취소가 불가합니다.
   가.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등을 실행한 경우
   나.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

6. 은행은 MP 로부터 매매계약 취소전문이 접수되는 경우,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하기로 하며, 취소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7. 매매보호거래 시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MP 로부터 매매계약 취소전문이 접수되는 경우, 결제일 이후에도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무관한 승인금액에 대하여는,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강제로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으로 승인명세가 전송된 이후에는 승인명세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 시 MP 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서 상의 “권리이전(인수)예정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은행은 MP 로부터 전송된 매매계약서와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으로 은행으로 전송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명세 전송에 의한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이 발생하는 등,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구매기업이 약정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제 6 조(감액,정지 조항)”에 의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3.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
4. 기타 구매기업과 체결한 약정 상 지급승인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
5.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5 조(판매대금의 입금)

① 은행은 다음과 같이 판매대금 입금업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1. 선입금신청시 : 선입금 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2. 만기입금시 : 결제일에 수수료를 차감한 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 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입금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선입금은 승인명세 건별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하여 선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판매기업이 선입금 신청시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 인터넷뱅킹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기로 하며, 이때 제출하는 "납품대금 선입금신청서" 상의 인감이 판매기업의 입금계좌 인감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대출이자 및 수수료의 운영기준)

대금 입금시 발생하는 선입금이자 및 각종 수수료는 은행, 구매기업 및 MP 가 약정한 금리 및 수수료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선입금 이자는 선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 징구하는 이자로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2. B2B 구매론 이용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가. 취급수수료 : 지급승인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지급승인 건별 일천원(₩1,000)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 시 차감합니다.
   나. B2B 이용수수료 :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은행과 MP 간 협약에 의해 사전 결정되며,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MP 수수료 :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 시 MP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은행이 수납대행하며,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B2B 이용수수료와 MP 수수료 부담주체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선입금의 제한)

다음 각 항의 1 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입금을 제한합니다.

1. 매매보호거래 시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급보류가 등록된 경우
3. 구매기업의 요청 또는 당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해 선입금 금지가 등록된 경우
4.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을 받는 등,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B2B 구매론 계약을 위반한 경우
5.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8 조(지급보류)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이 송달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구매기업으로 송달되는 경우
   가. 해당 승인명세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명세를 취소하고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에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나. 일부라도 선입금이 실행되어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기업으로부터 지급보류신청을 받아 잔여액에 대하여 지급보류등록 하기로 합니다.
2. 은행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송달되는 경우
   가. 특정 승인명세에 대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선입금하지 않은 승인잔액이 있으면 지급보류등록을 하기로 합니다.
   나. 판매기업에 대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지급보류등록하며, 추가적인 지급승인이 금지됩니다.
3. 지급보류 등록한 승인명세의 처리
   가.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 시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을 보류하고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나.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9 조(이용시간)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조회	24 시간	가능
판매기업 등록	08:00~22:00	불가

5-06-0558(3 - 6) (2021.03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215호(2021.03.23)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5년)

선입금 신청	08:00~19:00	불가
구매자료 승인/변경/취소 (당일전송 당일만기) (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	08:00~22:00 08:00~15:00(EDI 14:00 까지) 08:00~20:00(EDI 16:00 까지)	불가
벤더입금	08:00~19:00	불가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0조 (지연이자 수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구매기업이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B2B구매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② 구매기업이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B2B구매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제 11 조 (정보제공의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판매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선입금 내역 등의 거래내역 등을 은행이 구매기업 또는 MP 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약정의 체결 및 변경)

① B2B 구매론 이용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본 약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본 약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한 경우 은행과 판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본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본 약정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4 조 (약정의 효력)

① 이 약정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의 순서로 합니다.

②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판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5-06-0558(4 - 6) (2021.03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215호(2021.03.23)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5년)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월 일

판매기업: _____(인)
주 소 :

5-06-0558(5 - 6) (2021.03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215호(2021.03.23)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5년)

B2B 구매론 판매기업 거래신청서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 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1. 판매기업 정보 (협력기업코드 :)

법인명 (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명)		대표이사(대표자) 생년월일	
업 태		종 목	
주요취급품목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규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공공 및 기타		

※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에 "✔ 표시 합니다.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휴대전화번호	
담당자팩스번호		담당자이메일	

3. 첨부서류

(1)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자서시 생략가능),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3)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
① 법인사업자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② 개인사업자 : 위임장(개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4) 공동대표인 경우
①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 인과 약정 체결합니다.
(5) 위의 기본서류 외에 판매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B2B 구매론 판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판매기업) : _____(인)

5-06-0558(6 - 6) (2021.03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215호(2021.03.23)
(보존년한:완제일로부터5년)